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적정성 평가 제도 도입〉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7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비 부담 의견서에 지자체 재정상황 명시(안 제7조제2항)	2
2.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적정성 평가 도입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추가 (안 제9조 및 제10조)	7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용갑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4. 7. 8.

다. 회 부 일 :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차등보조율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이 한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시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토록 하여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방비 부담 의견서에 지자체 재정상황 명시(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u>의견서(지자체 의견 포함)</u>를 회계연도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재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u>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한 의견서(지자체 의견 포함)</u>를 회계연도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재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협의 요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함)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86년 법 개정²⁾으로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법 개정³⁾을 통해 의견서 제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관리법개정법률」(법률 제3874호, 1986. 12. 31. 공포·시행)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145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

출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음.

그런데 정부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보조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예산 집행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있음.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방비 부담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 제13조4) 및 「지방재정법」 제22조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재정의 경직성 및 재정자주권의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국고보조사업	94.2	105.6	112.7	116.4	123.8
(국고보조금)	65.6	74.8	79.4	83.1	89.3
(대응지방비)	28.6	30.8	33.3	33.3	34.5

※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의 가중 및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지방재정자립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지방비 부담 협의 내부기준>

구 분	검토사항	세 부 기 준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사업성격/ 정책효과	① 국가·지방 공동사무인 경우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거나 형평과 소득분배 성격을 갖는 사업인지 여부 ② 국가 정책에 의해 정책적으로 장려되는 사업인지 여부
	유사사업 등 비교	① 관계법령 또는 사업 주체·성격 등이 유사한 사업과 비교하여 지방비 부담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② 전년도 대비 지방비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았는지 여부
지방비 부담 가능성	지방재정 여건	① 지방비 부담을 위한 별도 자원 마련 대책이 있는지 여부 ② 별도 자원대책이 없다면, 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비추어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정도인지 여부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비 부담 협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포함한 부담 필요성, 부담수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어, 현재도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방비 부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며, 개정안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 보조 확대 요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u>그 의견서</u>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한 의견서</u> ----- ----- ----- ----- -----.

2.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적정성 평가 도입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추가(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추가 -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u>분야별 재정지출지수</u> 등	○ 기준보조율 적정성 평가 - 기준보조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관련 법령 정비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적정성 평가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관련 법령 정비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추가 -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u>분야별 재정지출지수</u>, <u>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수요</u> 등

현행법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함) 및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체인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그런데 기준보조율은 한번 정해진 후 비율의 변동이 없는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이 있으며, 차등보조율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에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에 그 적용대상이 되는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수요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 도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기준보조율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도 기준보조율은 매년 중앙관서의 수요조사·건의를 거쳐 경제·사회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평가·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개정안에 따른 적정성 평가 제도 도입 시 평가 환류의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별표 1(기준보조율) 개정⁸⁾ 사례 >

사업명	개정 전 (%)	개정 후 (%)
하수처리장 확충	광역시 : 10, 50(총인처리시설) 시 : 50(읍 이상), 군 : 70(면 이하) 미군공여구역, 방폐장 주변지역 : 80	광역시 : 30 특별자치시·도, 시·군 : 60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	광역시 : 30 특별자치시·도, 시·군 : 60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광역시 : 30, 도청소재지 : 50 일반 시·군 : 70	광역시 : 30 특별자치시·도, 시·군 : 60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33231호, 2023. 1. 17. 공포·시행)

또한,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차등보조율 제도를 시범운영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율의 인상만을 요구하고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다고 보아 일부 복지분야에만 차등보조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보조율 인상 시 차등보조율, 인상폭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및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대립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⁹⁾에 따라 기획재정부 차관, 관계 중앙관서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연 1회 이상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을 심

9)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 중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검토·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행정안전부와 관계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조회·건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및 지방비 부담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 해당 중앙관서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적정성 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현재도 차등보조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위원회의 의결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임.¹⁰⁾

<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보조금관리법 제5조제1항 관련) >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1. 재정자주도	가. 계산식: $\{(\text{지방세수입}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교부세} + \text{재정보전금} + \text{조정교부금})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
2.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가. 계산식: $\{\text{분야별 세출예산 순계(純系) 규모}(\text{일반회계} + \text{특별회계}) / \text{세출예산 순계 규모}(\text{일반회계} + \text{특별회계})\} \times 100$ 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 분류에 따른 13개 분야(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각각의 예산 규모를 말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를 사용한다.

10)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사업에 대해 '22년부터 차등보조율 적용중

<2024년 예산 기준 차등보조율 적용 사업현황>

적용분야	사업명	수행부처	사업내용	예산액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¹¹⁾
사회복지	생계급여	복지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75,394	서울 50 지방 80	82.8
사회복지	주거급여지원	국토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저소득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지원(기초생활보장급여)	27,424	서울 50 지방 80	82.8
사회복지	교육급여	교육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1,582	서울 50 지방 80	82.8
사회복지	해산장제급여	복지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또는 사망 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426	서울 50 지방 80	82.8
사회복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복지부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2,707	서울 50 지방 80	82.8
사회복지	자활사업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 및 빈곤 예방	6,595	서울 50 지방 80	82.8
교육	영유아보육료 지원	교육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26,731	서울 35 지방 65	69.4
교육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교육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1,081	서울 35 지방 65	68.8
교육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지원	교육부	국공립·법인 및 취약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18,863	서울 20 지방 50	51.8
교육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교육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법정 보수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	13	서울 20 지방 50	48.0
사회복지	아동수당 지급	복지부	8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21,115	서울 50 지방 70	75.6
사회복지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복지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원	28,887	서울 35 지방 65	68.3
사회복지	첫만남이용권 지원	복지부	출생초기 아동 가계양육부담 지원	3,802	서울 35 지방 65	68.5
사회복지	기초연금지급	복지부	기초연금 지급	202,015	40 ~ 90	82.8

자료: 기획재정부

11) 차등보조율 적용한 실제보조율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준보조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u>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생략)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u>분야별 재정지출지수</u>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분야별 재정지출지수</u>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수요----- ----- ----- ----- ----- ----- <u>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u>
<u>③</u> (생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2